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77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시행(‘24.5.17)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하는 한편,

자녀 출산 시 완화된 자산요건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안 제4조제5항)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변경
나. 출산가구 자산요건 완화 적용 시 제출서류 근거 규정(안 별표)

자녀를 출산·입양·임신중인 경우로 완화된 자산요건 적용 시 필요

한 증빙서류(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를 규정
다. 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기준 근거
규정(안 별표)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공급유형 삭제

* (現) 일반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 (改)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